

2024년도 제2회 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정책지원관)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 제2회 경기도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경기도구리시의회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직급	인원	담당직무	근무기간 (근무시간)
정책지원관 (정책지원팀)	일반 임기제7급 (지방행정주사보)	2명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지원	임용일~ 1년 (주40시간 /5일)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으며,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 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 바. 삭제 <2022. 1. 4.>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 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들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 거주지, 성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자)

○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의 경우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 지방행정주사보)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교, 연구소, 법인 등에서 행정, 법무, 회계, 감사, 조사, 분석, 연구 관련 업무경력 ◆ 우대사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시간제근무일 경우 주당근무시간 반드시 기재)-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

-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관련 분야 경력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또는 면접 당일 자격증 원본 지참(확인)

4. 근무조건 및 보수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기간	보 수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7급	1년	47,157천원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등에 따라 연장 가능
 -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최장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함.
- ▶ 연봉의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 (※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연금수령자의 경우 임용시 연금중단 등에 대해 필히 확인후 서류접수 희망
- ▶ 복무 및 기타사항은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름

5.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24. 7. 1.(월) ~ 7. 3.(수)	2024. 7. 9.(화) 예 정	2024. 7월 중 예 정	2024. 7월 중 예 정

※ 공고 및 발표는 경기도구리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gcc.or.kr>)에 게시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확인)

나.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1.(월) ~ 7. 3.(수)[3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

가.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 ~ 12:00, 13:00 ~ 18:00)내 접수
 ※ 구리시수입증지 구입처 : 구리시청 종합민원실 1층 7,000원
- 가족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가족방문 시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나.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도착분까지 인정하며 등기발송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바람(031-550-2021)
- 주소:(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의회 의정팀 인사담당자
-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교환하여 동봉, 봉투에 반드시 “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표기

※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 유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 제출

- 우편 접수시 응시표는 이메일 발송하오니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
하시기 바라며, 면접시험 시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연번	서류항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서식 1
2	응시원서 1부 * (방문접수) 구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구리시수입증지 부착,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의정팀) 에 원서 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 유의)	서식 2
3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미인정)	서식 3
4	자기소개서 1부	서식 4
5	직무수행계획서 1부(서식의 작성요령 참고, A4 용지 3매 내외 작성)	서식 5
6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서식 6
7	그 밖의 각종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가 상당한 기간 이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시간할 계산) * 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등)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서식 7
8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사본 <u>각 1부</u>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가. <u>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u>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나. <u>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u>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9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부.	
10	주민등록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	-
11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서식 8
13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서식 9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10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기재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단 6개월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이어야 함

9. 기타 주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 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 구리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gcc.or.kr>)에 공고합니다.
(기존 응시원서 제출자는 재공고 시 은시번호 그대로 반영)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의원면직(계약해지)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원본을 반환해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31-550-2021)